



제413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개설 〉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119호)

2024.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개설	3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기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3. 12. 29.
3. 회 부 일 : 2023.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개설

□ 개정안은 은행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으로 1월간의 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이 다른 은행의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하여 예금자가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¹⁾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3(생계비계좌) ① 은행은 예금자(자연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금 등 금전채권²⁾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음³⁾.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법원의 결정인 압류명령으로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등)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은행 등)는 채무자(예금자)에 대한 예금 지급이 금지됨.

○ 다만,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 ①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급여채권, 퇴직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과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85만원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개별법은 각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는 국가의 강제적 행위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각종 청구권

3)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2005년 120만원 이하, 2011년부터 150만원 이하, 2019년부터 185만원 이하

< 압류금지 채권 >

구 분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제246조제1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법령에 따른 압류가 금지된 권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제1항) 수급품을 받을 권리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연금수급권 (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근로기준법 제86조)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 (공무원연금법 제39조) 급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의료급여법 제18조제1항)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1항)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등 다수

○ 그런데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인 수급권자의 급여 등이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⁵⁾, 이로 인해 수급권자의 급여 등이 입금되는 계좌가 압류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별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의 급여 등이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

5)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고6) 전용계좌의 예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소위 ‘압류방지통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7).

< 개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및 압류방지통장 >

근 거	압류금지 예금채권	압류방지통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제2항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행복지킴이통장
국민연금법 제58조제3항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	국민연금 안심통장
고용보험법 제38조제2항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행복지킴이통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행복지킴이통장
의료급여법 제18조제2항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	행복지킴이통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2항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행복지킴이통장

□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금(이하 ‘생계비’)”은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압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7) 압류방지통장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당 1계좌씩 개설이 가능함.

○ 금융기관이 특정 예금 채권의 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시 채무자의 모든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있기 때문임⁸⁾. 이로 인해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를 인출하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야 하는데⁹⁾, 범위변경 신청 등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어¹⁰⁾ 채무로 인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수급권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생계비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생계비 압류금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사집행법」상 생계비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실질적으로 수급권자에게만 보장되고 있는 압류금지통장을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하여 전 국민을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예금 압류 후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생계비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8) 은행은 압류에 의해 채무자(예금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며(「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 은행이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안게 되는 반면, 은행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를 압류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은행은 생계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향이 있음.

9)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고 있음.

10) 통상 신청부터 결정까지 2주에서 1달이 소요되며, 인지세, 송달료, 법무사 수임료 등이 발생함.

생계비계좌 외의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한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도 「민사집행법」 제 246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생계비)을 보다 실효성있게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음.

□ 다만,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생계비 압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개설 및 계좌압류 금지의 근거를 「은행법」과 「민사집행법」 중 어느 법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주요 내용이 은행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사항이고, 은행의 예금 압류 실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안은 주요 예금취급기관인 은행을 규율하는 「은행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생계비 보장을 위한 예금 압류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은행법」의 법 목적¹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개별법률이 압류금

11) 「은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채권 규정과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압류 금지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생계비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에 생계비계좌 개설 및 계좌압류 금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과 같이 주요 예금취급기관인 은행을 규율하는 「은행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은행법」이 아닌 개별법(「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을 적용받고 있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종합금융회사 등)에도 이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생계비계좌 은행 개설로 인해 주거대출은행 및 요구불예금이 이동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신용협동조합법」 등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셋째, 개정안은 압류금지 금액을 “1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은행법령에서 압류금지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의 취지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을 보다 실효성있게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은행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보다는 민사집행법령¹²⁾을 준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은행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입법례를 살펴보면 법에서 직접 「민사집행법」의 압류 금지금액을 인용한 사례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인용한 사례가 있음.

< 관련 입법례 >

구 분	조 문
법률에서 직접 민사집행법을 인용한 사례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압류할 수 없다.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인용한 사례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생략)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2) 민사집행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압류금지예금(「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과 압류 금지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를 합하여 185만원임.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넷째, 개정안은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액인 “1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약칭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용어인 ‘최저생계비’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같은 법 제2조제7호 및 제20조의2제4항¹³⁾)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만 7,067원¹⁴⁾임.

○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액(185만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는 목적, 결정 주체 및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일반 국민이 이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14) 2024년 최저생계비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연합회에서는 1인 1생계비계좌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104